

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

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9. 30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



1. 건 명 :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 처분 사전통지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동법 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사업장 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○식	199-07-00482	처분사전통지서, 의견제출서	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	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	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(1년)	폐문 부재	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 : 2026. 09. 30. ~ 2026. 10. 14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오승재(Tel 051-330-99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